

 국토교통부		보도자료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		배포일시	2021. 7. 16.(금) / 총 4매(본문3, 참고1)	
담당 부서	항공운항과	담당자	• 과장 오성운, 사무관 조종관, 주무관 김영재 • ☎ (044) 201-4259, 4786, 4279	
	항공산업과	담당자	• 과장 허경민, 사무관 신우철, 주무관 김선희 • ☎ (044) 201-4219, 4223, 4228	
	항공보안과	담당자	• 과장 이소영, 사무관 박상현, 주무관 허백용 • ☎ (044) 201-4232, 4237, 4235	
보도일시	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국토교통부, 에어프레미아(주)에 운항증명(AOC) 발급

-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에어프레미아(주)에 대한 안전운항체계 검사를 완료하고, '21.7.16(금) 「항공안전법」에 따라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(AOC : Air Operator Certificate)을 발급한다고 밝혔다.
- 운항증명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후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, 시설, 장비 및 운항·정비지원체계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일종의 안전면허이다.
- *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 국제기준에 따라 전 세계 항공사들이 자국 정부로부터 항공기 운항 개시 前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안전능력 검사·증명

< 운항증명(AOC) 검사 추진개요 >

- (검사기간) 2020. 3. 6. ~ 2021. 7. 15.
- (검사팀)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(조종, 정비, 객실, 운항관리, 위험물 등 10명), 운항자격심사관(2명), 항공산업(1명), 항공보안(1명) 등 총 14명
- (검사절차) ① 신청 접수 및 예비평가 → ② 서류검사 → ③ 현장검사 → ④ 운항증명서 발급
- (검사내용) 국가기준(85개 분야, 3천여개 검사항목)에 따라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직·인력·시설·규정 등 적정성 여부 검사

< 운항증명 주요 확인사항 >

-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('19.3.6)한 에어프레미아(주)가 '20.2.28(금) 운항증명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조종·정비 등 분야별 전문 감독관 등으로 전담 검사팀을 구성하여 '20.3.6(금) 부터 에어프레미아(주)의 안전운항능력 확보상태 전반에 대하여 운항증명 검사를 진행해왔다.
- (서류검사) 「항공안전법」에서 정하는 운항증명 검사기준에 따라 △조종사·정비사·객실승무원·운항관리사 등 전문인력 확보여부 △항공기 안전관리 조직, △운항·정비규정 △자체 안전관리 시스템(SMS) △항공사 자체보안계획 등의 적정성을 서류로 확인하고,
- (현장검사) △조종사 기량 확보를 위해 실제 항공기로 약 50시간의 시범비행 △항공기 비상탈출슬라이드 전개 등 비상탈출·착수 시현 △종사자의 자격·훈련 상태 △예비부품 확보상태 △주요 취항 예정공항의 운항준비상태 등을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였다.
- 한편, 이번 에어프레미아(주)의 운항증명 기간은 코로나-19 확산에 따른 제작사(Boeing) 공장 폐쇄 등으로 인해 항공기 도입 일정이 당초 '20.7월에서 '21.4.2로 지연되는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, 다른 항공사에 비해 다소 많이 소요되었다.
- * 에어프레미아: 16개월, 에어로케이: 14.9개월, 플라이강원: 6.3개월 등
- 아울러, 에어프레미아(주)가 운항개시 이후에도 안전운항체계를 지속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재무능력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번 운항증명 검사에서 면밀히 확인하였다.
- 에어프레미아(주)는 '19.3월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취득 당시의 자본(자본금: 192억원)으로 운항증명을 준비해왔으며, 현재 추진 중인 추가 자본확충(650억원 규모)과 운항개시 이후에 발생할 매출로 일정기간 동안 인건비·리스비·정비비 등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.

< 운항증명 발급 이후 안전관리 >

- 향후, 에어프레미아(주)는 국토교통부의 노선허가 취득, 운임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운항개시가 가능하며, 운항개시 이후 일정기간 동안 정부의 중점 감독대상으로 지정되어 특별 관리를 받게 된다.
- ① 국토교통부는 에어프레미아(주)에 전담 감독관(조종·정비 각 1명)을 지정하고 취항 후 1개월까지 현장 상주하면서 비행계획 수립, 출발 전·후 항공기 점검, 실시간 운항통제 등의 규정 준수상태 전반을 밀착 모니터링하고,
 - 취항 후 6개월 시점에 운항증명 당시 확인한 안전운항체계가 지속 유지되고 있는지 종합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.
- ② 항공사가 제출한 재무건전성 확보계획과 관련해서도 주기적으로 이행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,
 - 향후, 항공기 추가 도입, 신규노선 취항 등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재무상태 등을 면밀히 관리·감독할 예정이다.
- 국토교통부는 “운항증명 발급은 항공사 안전운항체계 유지의무가 부여되는 안전관리의 시작 단계”라면서,
 - 에어프레미아(주)로 하여금 “항공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안전투자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”을 강조하였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운항증명 관련 : 항공운항과 조종관 사무관(☎044-201-4786)

○ 면허 및 재무건전성 관련 : 항공산업과 신우철 사무관(☎044-201-4223)

□ 운항증명(AOC : Air Operator Certificate) 개요

- 항공사의 조직·인력·장비·시설, 운항관리·정비관리 및 종사자 훈련프로그램 등 안전운항체계를 검사하고, 기준에 적합 시 **운항증명**(증명서)과 **운영기준**(운항조건 및 제한사항) **발급**(안전면허에 해당)

* 「항공안전법」 제90조(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), 「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」(훈령), 「항공안전감독관 업무 매뉴얼」(예규)

□ 업무처리 절차(법정 처리기간 90일, 공휴일 제외)

- ① 신청서 접수 → ② 예비평가 → ③ 서류검사 → ④ 현장검사 → ⑤ 운항증명서 및 운영기준 교부

※ 신청서 접수 前 준비사항 설명 및 추진일정 사전협의 필요

□ 주요 검사항목(시행규칙 별표 33)

서류검사 주요내용	현장검사 주요내용
① 사업계획서 내용의 추진일정 ② 조직·인력의 구성, 업무분장 및 책임 ③ 항공법규 준수의 이행 증명서류 ④ 항공기, 운항·정비시설 계약·임차서류 ⑤ 종사자 훈련교과목 운영계획 ⑥ 운항·정비규정(운항일반교범, 항공기 운영교범, 최소장비목록 및 외형변경목록, 훈련교범, 항공기성능교범, 노선지침서, 비상탈출절차교범, 위험물교범, 사고절차교범, 보안업무교범, 항공기탑재·처리교범, 객실승무원 업무교범, 비행교범, 지속감항정비 프로그램, 지상조업 협정 및 절차) ⑦ 승객 브리핑카드 ⑧ 급유·재급유·배유절차 ⑨ 비상구열 좌석 배정절차 ⑩ 약물 및 주정음료 통제 절차 ⑪ 운영기준에 포함될 자료 ⑫ 비상탈출 시현계획 ⑬ 항공기 운항검사 계획서 ⑭ 환경영향평가서 ⑮ 훈련계약에 관한 사항 ⑯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계약·임차서류	① 지상의 고정 및 이동시설·장비 검사 ② 운항통제조직의 운영 ③ 정비검사시스템의 운영 ④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검사 ⑤ 훈련프로그램 평가 ⑥ 비상탈출 시현 ⑦ 비상착수 시현 ⑧ 기록 유지·관리 검사 ⑨ 항공기 운항검사 ⑩ 객실승무원 직무능력 평가 ⑪ 항공기 적합성 검사 ⑫ 주요 간부직원에 대한 직무지식에 관한 인터뷰